

대구지방법원 2017. 10. 19 선고 2017가단5300 판결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등]

전 문

원고A

피고B

변론 종결 2017. 9. 14.

판결 선고 2017. 10. 19.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 가.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 내에 별지 도면 표시 2, 3, 4, 5, 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가)부분 길이 약 600㎡, 평균높이 약 250cm, 폭 약 860㎡의 시설물(판넬지붕), 별지 도면 표시 1, 2, 5, 6,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나)부분 길이 약 300㎡, 평균높이 약 250㎡, 폭 약 860㎡의 판넬지붕 컨테이너 1동, 별지 도면 표시 3, 4, 5, 6, 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다)부분 컨테이너 1동, 별지 도면 표시 2, 3, 6, 7, 1, 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라)부분 컨테이너 1동,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마)부분 약13㎡의 저울,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바)부분 컨테이너 1동 및 고철, 파지 등을 각 철거하고,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 나. 2017. 1. 1.부터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1,1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는 소장 부분을 송달받고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 출석도 하지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판사이영숙

별지